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48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김원이ㆍ이해식ㆍ김남근

김교흥 · 신정훈 · 이기헌

박균택 • 서미화 • 박지혜

김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국가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 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에 투자 확대 를 가속화하고 있음.

그런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처럼 반도체·이차전지·디스 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고품질 ·대용량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 가 있으나 전력공급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특화단지를 지정하였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중전력계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이 특화단지에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나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제16조제3항 및 제23조의2·제2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지역"을 "지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총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제4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3(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
정) ①・② (생 략)	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③
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u>지역</u>	2 <u>지역</u>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에 지
	<u>장이 없는 지역에 한정한다)</u>
<u><신 설></u>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
	지를 이용한 전기의 총생산량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u>이상인 지역</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23조의2(국고보조금의 인상지
	원) 국가는 제16조제3항제3호
	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 사업
	시행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신 설>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 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3(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
된 특화단지에 대하여는 「주
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
할 수 있다.